|  |
| --- |
| **비밀유지 계약서** |

**비씨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 한다)와 주식회사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이하 ‘GME’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비씨카드’와 ‘GME’가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함에 있어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비씨카드’·’GME’ 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비씨카드’와 ‘GME’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비씨카드’와 ‘GME’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비씨카드’와 ‘GME’는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비씨카드’와 ‘GME’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비씨카드’와 ‘GME’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비씨카드’와 ‘GME’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제외사유)**

‘비씨카드’와 ‘GME’는 계약내용에 관한 비밀은 물론 본 계약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부터 ‘비씨카드’와 ‘GME’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씨카드’와 ‘GME’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씨카드’와 ‘GME’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씨카드’와 ‘GME’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상호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비씨카드’와 ‘GME’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손해배상 등)**

‘비씨카드’와 ‘GME’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비씨카드’와 ‘GME’는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23년 8월 1 일**

     ’비씨카드’ ‘GME’

     서울시 중구 을지로 170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비씨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대표이사 최 원 석 (인) 대표이사 성 종 화 (인)